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81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전진숙

김정호・윤종군・위성곤

김문수 · 민병덕 · 손명수

권향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사라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 (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자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 참사 사건과 유명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하여 악성게시물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 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및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

및 사실을 출판물 등에 적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여 악성 게시물 등을 통해 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308조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8조 · 제309조 및 제3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③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사자를 모욕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第308條(死者의 名譽毀損) 公然히 虚偽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 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2年 以 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 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309條(出版物等에 依한 名譽毀損)損)① 사람을 誹謗할 目的으로 新聞,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에 依하여 第307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方法으로 第307條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 停止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 정 안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

第311條(侮辱)公然히 사람을 侮辱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萬원 以下의罰金에 處한다.

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 판물에 의하여 제30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8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상 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사자를 모욕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